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7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진선미・이학영・임오경

최기상 • 문정복 • 이기헌

이광희 · 조승래 · 박성준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·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,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 여 지역·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	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
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・설비	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	
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u><후단</u>	
<u>신설></u>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
	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
	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
	<u>적용할 수 있다.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